

[판결비평] 2007-1

광장에 나온 판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한·미FTA 협정문초안 공개가 국익을 매우 해친다는 판결, 동의하세요?

서울행정법원 제3부 2007.2.2. 선고, 2006구합2309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사 안철상(재판장), 이종림, 이종채

사법 분야에 대한 시민감시활동과 사법개혁 운동을 하고 있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의 판결 중 사회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된 판결,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판결 또는 그에 반대하여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고르고, 이 판결에 대한 비평칼럼을 수록한 [판결비평 - 광장에 나온 판결] 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판결비평 - 광장에 나온 판결]의 2007년 첫 번째 비평대상으로, 현직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미FTA협정문 초안을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소송에서, 협정문초안을 공개할 경우 이후 다른 국가들의 통상교섭에 활용될 수 있고, 한·미간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등 공개될 경우 국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한 지난 2월 2일의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2월 2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안철상 판사, 이종립 판사, 이종채 판사)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미FTA협정문 초안을 공개해 달라는 행정소송에서, 공개할 경우 국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 판결하였다.

이번 소송은, 한미FTA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미국이 이미 서로 교환한 협정문 초안을 현직 국회의원이 정보 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 해당 기관인 외교통상부가 비공개 처분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외통부는 비공개 사유로 협정문 초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에 해당하며 한미 양국정부가 문서를 비공개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들었다. 이에 대해 청구인측은, 협정문 초안이 공개된다고 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원은 한미FTA협정문 초안은 외교관계의 사안으로 공개될 경우, 다른 국가들의 교섭정보로 활용될 수 있고, 한미 양국간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등 “국가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정보공개의 비공개사유로 제시한 “국가 중대한 이익 침해”에 대해 법원이 과연 제대로 판단한 것인가, 국가 중대한 이익이란 결국 협상 결과의 직접 당사자인 국민의 이익일 것인데, 법원이 동의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라고 한 것이 과연 일반 국민도 동의할 수 있는 사안인가 하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함께 토론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 판결을 비평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비평칼럼은 박주민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이경미 간사(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편집국장이 작성하였다(편집자 주).

“현실성 없는 위험내세워 진짜 국익 외면한 판결”

박주민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현역 국회의원의 한미FTA협정문초안 정보공개 청구

우리 정부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한·미 FTA)을 체결하기 위하여 2006.5.경 총 22개 장(Chapter)으로 구성된 협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2006.05.19. 미국과 협정문 초안을 서로 교환하였다.

이에 권영길 의원은 2006.5.30.에, 강기갑 의원은 2006.6.1.에 각각 정부와 미국이 제시한 각 협정문 초안 전문에 관하여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외교통상부에게 청구하였다.

외교통상부는 2006.6.1. 권영길, 강기갑 의원에게 각 협정문 초안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면서, 한·미 양국정부는 협정문 공개 문제와 관련하여 협정의 최종

합의문은 타결 즉시 공개하고, 협상 중 생성문서는 발효 후 3년간 비공개 취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통보하였다.

이 같은 외교통상부의 비공개 처분에 대해 권영길, 강기갑 의원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판사 안철상(재판장), 이종립, 이종채)는 한미FTA는 통상에 관련된 문제이나 이것도 외교관계라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한미FTA는 다른 어느 통상 협정보다도 국익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협정문 초안이 공표될 경우 이후의 통상교섭에 있어 다른 국가들의 교섭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고, 한·미 양국이 합의한 비공개 사항을 우리나라가 어기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법원은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외통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미국정부도 자국의 기업 등 민간단체에 공개하지 않는가?

협정문이 공개되면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우리의 협상 상대방인 미국도 과연 국익을 위하여

협정문을 공개하지 않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미국 헌법은 대외통상에 관한 권한과 관세 및 조세를 부과할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는데, 미국 의회가 자신의 권한 행사를 위해 행정부에게 배치한 조직이 바로 USTR이다. 그런데 이 USTR은 통상정책을 수립할 때 반드시 민간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미국 의회의 관심 사항과 입장이 통상협상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통상법에 명문화 하였다(1974년 미국 통상법에서 제정하여 2002년 통상법에서는 민간 자문위원회를 더욱 더 강화하였다).

2002년의 미국 통상법에 따르면, 이러한 민간자문위원회는 전체 3개 층위로 구성되어 있다. 최상층은 대통령 직속의 통상정책 및 협상자문위원회(ACPTN)이며 이 아래에 ① 정부간정책자문위원회, ② 농업정책자문위원회, ③ 노동자문위원회, ④ 무역 및 환경정책자문위원회 등 모두 4개의 정책자문위원회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 층위에는 22개의 기술별/부문별 자문위원회가 있다. 기술별/부문별 자문위원회는 산업과 농업 2개의 분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현재 미국의 경우 위 3개 층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 포함된 위원만 약 700명에 이르며, 이들 위원 중에는 회원사가 수천 개에 달하는 협회 소속 위원들도 포함되어 있고, 학계와 공익단체 역시 포함되어 있다.

한미 양국은 한미FTA 1차 본 협상을 앞두고 2006년 5월 20일 협정문 초안을 교환했다. 그런데 미국 내 수 백 개의 계약관련 기업들의 연합체로 구성된 한 협회가 협정문 초안을 교환하기 무려 11일 전인 2006. 5. 9. ITAC 3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허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의 독점권, 특허기간 연장, 의약품 허가 과정의 특허 연계 등"에 대한 것이다. 이 의견서에는 막연하게 한미FTA에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미국 측이 만든 한미FTA 협정문 초안의 특정 조항의 문구 수정까지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한국 FTA 협정문에 대한 몇 가지 수정을 제안한다"고 하면서, 지적재산권 장 제9조의 "동일 또는 유사 품목"에서 "유사 품목"이란 표현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제8조의 (7)(a)-(b)항은 특허기간 연장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 의견서를 작성한 협회가 미국 측이 준비한 한미FTA 협정문 초안 전체를 보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 협회는 ITAC 3 위원회의 정식 회원도 아니다.

요컨대, 미국 측은 한국 정부와 협상단의 그 동안 주장과는 달리, 광범위한 민간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관련 분

야의 이해당사자들에게 협정문 초안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문위원도 아닌 일반 기업이나 관련 협회에도 협정문을 그대로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오히려 정보를 공개하고, 이런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여 자신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안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것은 미국의 협상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협상력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이익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공개되어야

한미FTA협상이 이전의 어떤 통상 협정보다 중요한 협상이기에 이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어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우리나라에 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협상이 타결되도록 통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자국의 국회의원들이나 민간 기업들에게 협정문초안을 공개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국익침해, 대외 신인도 하락에 대한 법원의 우려는 현실성 및 타당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협정문 초안은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다.

미국과 힘을 합쳐 국민을 상대로 외교를?

법원은 협정문 초안이 내부의사결정과정에 있기에 이것이 공개되면 이익단체들의 영향을 받는 등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로 공개거부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런데 현재 외교통상부는 미국과 협정문 초안을 토대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이미 본 협상이 7차례나 이루어진 상태다. 그런데도 아직 내부검토과정에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미 협정문 초안은 내부검토가 아니라 우리의 협상 상대방인 미국과의 협상에 직접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내부검토과정에 있다고 하는 것은 미국을 내부로 보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정말 혹자가 외교통상부의 한미FTA협상 양태를 두고 '국민과 힘을 합쳐 미국과 외교를 하여야 하는데, 미국과 힘을 합쳐 국민을 상대로 외교를 하고 있다'고 평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정문 초안이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까?

위에서 이미 살핀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는 3개 층으로 구성된 민간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이에 포함된 위원만 약 700명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이들 위원 중에는 회원사

가 수천 개에 달하는 협회 소속 위원들이 포함되어 있고, 학계와 공익단체 역시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들 위원회의 정회원도 아닌 기업집단들 역시 풍부하게 제공되는 한미 FTA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반면에 이런 단체들을 외교통상부는 모두 이익단체라고 폄하하고 있다). 미국은 오히려 이런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여 자신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안을 협상안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것이 미국의 협상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협상력의 배경이 되고 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이익집단의 반발 등 추상적인 위협에 대한 우려만 가지고서 많은 좋은 조언을 듣고, 이를 협상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후진적인 외교협상 양태를 보이고 있다.

차라리 미국을 본받자

이제 늦었는지 모르지만 외교통상부 역시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 가장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을 만드는 미국의 협상 태도를 본받아 다양한 요구를 조화롭게 수용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협상에 임하는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다. 법원도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 전향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법원의 비공개 이유에 이의 있습니다”

이경미(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간사)

절차는 편해졌지만 내용은 부실한 정보공개청구 제도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종종 방문할 기회가 있는 사람이라면, 최근 2~3년 사이에 어느 기관이든지 새로운 메뉴(혹은 잘 눈에 띄지 않던 코너)가 전면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바로 ‘행정정보공개’ 코너이다. 전에는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서를 접수할 만큼, 그야말로 아는 사람만 아는 제도가 정보공개제도였다면,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지 10년에 접어들다 보니 정보공개제도를 잘 모르던 사람이라도 공공기관이 설명한 자료를 한번씩 둘러보고 필요할 때 신청해볼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법하다. 정보공개청구의 첫 단계인 ‘신청’ 절차가 편리해진 것이다.

그렇다면 너도 나도 ‘열린 행정, 투명행정’을 표방하며 정보공개청구를 선뜻 받아줄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데, 과연 시민들은 원하는 정보를 수월하게 얻을 수 있을까?

최근 1심 판결이 있었던 FTA 협상문 초안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건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에 ‘반응’하는 빠른 형식의 비공개 사안을 다룬 판결이었다.

원고는 FTA 협정문 초안을 사본 또는 출력물로 교부할 것을 외교통상부에 정보공개청구하였고, 외교통상부는 FTA 협상문 초안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공개로 규정되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며(제2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제5호)한다고 비공개했다.

보통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하면서 주로 인용하는 조항이 4개 있는데 그중 3개가 이번 건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나머지 하나는 제6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조항이다).

불만족스러운 판결

이에 대해 각각의 조항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불만족스럽다. 물론 FTA 협정문 초안이 대외비라고한 외통부의 주장에 대해, ‘대외비’는 보

안업무규정 시행규칙(행정규칙)에서 정한 것으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판결이다. 하지만 다른 2가지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는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점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최근 정부는 헌법과 사법주권 훼손, 공공정책과 규제 무력화 등을 초래할 수 있는 ‘투자자 - 국가 소송제’에 대해 그 위험성을 제대로 검토해 보지도 않고 협정문 초안에 담았다가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의 반대가 잇따라 수개월 후에야 TF를 구성하고 뒤늦게 수정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정부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정말로 위한다면 국민 생활의 근간을 뒤흔들 FTA 협상에 있어서 지금과 같이 주먹구구식으로 준비하고 전형적인 밀실 외교로 일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이 더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될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혜를 모으는 열린 행정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미 열람 공개가 되고 주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던 자료조차 비공개하겠다는 정부나 이를 용인하는 재판부의 판결은 매우 실망스럽다.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판단 역시, FTA 협상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보다는 일사천리로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것만 중요시하는 협상단의 편의만 봐주었다는 면에서 매우 불만족스럽다.

얼마 전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 한 부동산 대책 관련 회의 자료에 대해서도, 재경부와 건교부는 관련 정보가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음에도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이고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대부분 비공개 했다.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를 매우 폭넓고 모호하게 규정하여, 행정기관이 민감하거나 정책결과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손쉽게 비공개 결정을 내린 또 다른 사례이다.

정보공개제도는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이처럼 정보공개제도는 절차상의 편리함은 개선되어온 반

면, 실제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행정기관의 인식 수준은 정보공개법 시행 초기보다 전혀 나이지 않고 있다. 각 기관의 정보공개담당자가 아닌 공무원 중에는 아직도 정보공개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사유도 밝히지 않고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정보공개 비율이 행정기관 평가에 실적으로 반영되므로 공공기관이 비공개 결정을 내리기보다 청구인에게 취하를 종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갖가지 불합리한 사유에 의해 비공개 결정이 내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는 평균 33개월이 소요된다. 하지만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위의 FTA 협정문 초안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건처럼 법의 모호함과 행정정보에 대한 폐쇄주의적인 정서로 인한 공개 판결을 받기 쉽다.

정보공개제도가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비공개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에 입각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 절실하다.□

“비공개로 일관한 정부 손을 든 편협한 판결”

박상표(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편집국장)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도 못보는 정보?

지난 2월 2일, 서울행정법원은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의원과 강기갑 의원의 ‘한미 FTA 협정문 초안’ 정보공개 청구를 기각한다는 어처구니가 없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한미 FTA 협정문 초안’은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의 2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아는 것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우리의 국익은 누가 지켜준다는 말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 게다가 행정부의 몇몇 고위 관료들이 밀실에서 국가의 운명을 제멋대로 좌지우지 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아니면 어느 누가 통제할 수 있단 말인가.

행정부의 통상독재를 막기 위해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한미 FTA 협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알 권리가 있다. 사실 우리 측 협정문 초안은 이미 미국 통상대표부의 협상단에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과는 반대로 미국의 통상법 조항에는 FTA 협상을 시작하기 전부터 진행과정에 이르기까지 의회에 충분하고도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2년 미국 무역법에는 통상협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내실업 대책, 피해분야 기업대책, 농민대책 등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미국은 상·하원 의원들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에게도 협정문 초안을 공개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자문위원들과 산업계가 한미 FTA의 협상목표 수립, 협상 도중 목표의 수정, 협상 완료 후 평가 등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산업계의 전문가들을 비롯한 700여 자문위원 그룹과 26개의 자문회의를 통해 한국의 협상전략 및 협정문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하고 있다.

미국이 협정문 초안을 공개했다는 그 구체적인 증거는 이미 알려져 있다. 수백 개 제약 관련 기업을 회원으로 둔 미국의 한 협회는 미 무역대표부의 민간자문위원회에 의견서를 보내 “한·미 FTA 협정문에 대한 몇 가지 수정을 제안한다”면서 그 대상으로 의약품의 특허권, 독점권 등을

언급했던 것이 밝혀졌다. 특히 의견서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장 제9조”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품목”에서 ‘유사’란 표현은 삭제돼야 한다거나 “제8조의 (7)(a)-(b)항은 특허기간 연장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이와 같은 문서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국 정부의 한미 FTA 협정문 공개가 있었다. 미국 의약품 업계의 많은 사람들과 단체들은 한미 FTA 협정문 초안을 공유했으며, 한 자리에 모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구체적 내용에 대해 협의를 벌였던 것이다.

진정한 국익을 위해 법원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여태껏 통합협정문이나 초안, FTA를 결정하게 된 배경, 안전을 소상하게 설명하는 대외경제위원회 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이와 같은 통상독재는 국회를 허수아비 거수기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정부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국익’에 대한 정부 측의 주장만을 수용한 편협한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이런 정도라면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편협한 판결을 내렸던 사법부와 다를 바가 무어가 있겠는가.

정보의 공개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의사결정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상태에 빠져 있다. 과거의 역사는 친일반민족 행위, 노근리·경산 코발트 광산·대전형무소 등에서 대규모 민간인학살, 광주 5·18학살, 인혁당 사건·동백림 사건 등 간첩조작사건의 배경에 국익을 빙자한 정보독점과 비밀주의가 파리를 틀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진정한 국익을 위해서 한미 FTA 협정문 초안을 비롯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진정한 용기를 가진 법원이 되기를 기대한다.□